

# DK인증센터 규정

제정 2016. 6. 23. 개정 2016. 7. 28.

개정 2017. 5. 23. 개정 2017. 6. 30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기관은 대경대학교 DK인증센터 (이하 ‘센터’ 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본 대학교 구성원의 교육성과와 질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설치하는 DK인증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의 조직, 업무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7.5.23.]

**제3조(업무)**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- ① 평가인증을 위한 제반 정책기획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
- ② 평가인증의 항목, 기준, 절차 등 제도에 관한 연구, 개발 및 개선
- ③ 구성원 역량에 대한 분석, 관리 및 성과측정
- ④ 인증 사업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
- ⑤ 기타 평가인증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[제목개정 2017.5.23.]

[전문개정 2017.5.23.]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구성)** ① 본 센터는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으로서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28.>

② 센터에는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겸직할 수 있다.

③ 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센터 내에 운영팀 또는 산하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
**제5조(인력 및 조직)** 본 센터의 인원 충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센터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를 둔다. <개정 2017.5.23., 2017.6.30.>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평가·인증제도에 관한 연구·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
2. 평가·인증 항목, 기준,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7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회의 소집 및 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7.5.23.]

**제10조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) 제4조 (구성) ①항의 기획처 명칭은 ‘기획조정실’로 개정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